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92호 2019. 6. 17.(월)

공 고

- 공유재산 매각 일반경쟁 입찰 공고(6차) ----- 2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회람							
----	--	--	--	--	--	--	--

목포시 공고 제2019-851호

공유재산 매각 일반경쟁 입찰 재공고

전라남도 목포시 공유재산을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매각 입찰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목 포 시 장

1. 입찰건명 : 공유재산(건물) 매각 일반경쟁입찰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m²)

소 재 지	면적(단위 : m ²)			건축구조	예정가격	비 고
	전용면적	공유면적	대지권비율			
합 계					74,535,000	
목포시 상동 845번지 비파아파트 1차상가 지하2호	84.6	26	46.93/12855.6	철근 콘크리트 조	6,870,000	
목포시 상동 845번지 비파아파트 1차상가 지하3호	84.6	26	46.93/12855.6		6,870,000	
목포시 상동 845번지 비파아파트 1차상가 지하5호	118.2	36.34	65.55/12855.6		11,160,000	
목포시 상동 845-1번지 비파아파트 2차상가 지하1호	84	23.35	37.80/12937.5		30,645,000	
목포시 상동 845-1번지 비파아파트 2차상가 지하2호	84	23.35	37.80/12937.5			
목포시 상동 845-1번지 비파아파트 2차상가 지하3호	84	23.35	37.80/12937.5			
목포시 상동 845-1번지 비파아파트 2차상가 지하5호	117.3	32.61	52.78/12937.5		18,990,000	

3. 입찰참가자격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입찰방법

- 가. 일반경쟁 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입찰
- 나.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19. 6. 17(월). 10:00
-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19. 7. 10(수). 16:00
- 다. 개찰일시 : 2019. 7. 11(목). 10:00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입찰집행관 PC)

6. 입찰서의 제출

-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시간 및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 등 입찰관련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또한 동일한 입찰자가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 접수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접수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 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입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는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시금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낙찰자 결정

- 가.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낙찰자는 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결정하되,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나. 공개된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 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5%) 한도액을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무효로 합니다.
- 라.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 입찰서를 제출할 때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또는 공고내용의 중대한 하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매매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시와 매매계약을 체결(계약대금은 매각대금의 10/100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하여야 하며, 만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 나. 매각대금의 잔금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정기간 내에 매매계약 및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낙찰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 다. 계약 체결 장소 :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 라. 계약체결시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지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1부
 -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

14.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한 각종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우리 시 소관 공유재산 매각 입찰에 활용하는 입찰입니다.
- 나. 본 공고는 목포시청 홈페이지 및 온비드(www.onbid.co.kr)에 동시에 공고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온비드에 공고한 내용이 우선 합니다.
- 다.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본 매각 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 및 각종공부, 입찰공고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철저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매각 입찰 공고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확인 및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본 매각대상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합니다. 따라서 각종공부와 불일치, 주변 이웃과의 분쟁사항, 기타 시설(폐기물, 매매 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사유시설, 화장실 없음 등)의 제거 및 철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이행강제금등 제비용 부담 포함) 등은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 바. 매매계약 체결이후 공고,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과납금 중에서 계약보증금(국고 귀속 사유 발생시), 원상복구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이자 가산 없이 반환 조치됩니다.
- 사.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한사항에 의한 요건 미비로 등기 또는 취득제한이나 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 하더라도 우리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아.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야 가능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낙찰자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자.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포함)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합니다.

15.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및 온비드 센터(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서 제출 여부 :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입찰상세보기
- 다. 입찰결과 :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입찰결과
- 라. 공고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공고 고시와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마. 기타사항은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061-270-3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공고 제2019-861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 도시계획조례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1건)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규정(안 제13조)
- 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규정(안 제13조의2)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규정(안 제13조의3)
- 개발행위허가 기준 상 입목축적도 기준 규정(안 제17조)
- 입목축적도 조사방법 규정(안 제17조의2)
-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규정(안 제35조)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야영장 시설 불허 규정(안 제43조)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규정(안 제48조의3)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안 제51조)
-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허가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별표 5, 별표 8)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 분리된 사항 반영(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9, 별표 10, 별표 12, 별표 14, 별표 17, 별표 18, 별표 19)
-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 완화(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나.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반영(2건)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규정(안 제11조)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항 신설(안 제26조의3)

다.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1건)

-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규정(안 제5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의견 없음
 -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 안 제11조, 제26조의3, 제17조, 제17조의2, 제57조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 안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35조, 제43조, 제48조의3, 제51조,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별표 17, 별표 18, 별표 19

7. 예산 상황 :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

8. 입법예고 기간 : 2019. 6. 17. ~ 7. 8.(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7. 8.까지 목포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9),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58613,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도시계획과)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61-270-8414, FAX : 061-270-3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따로 정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을 “자동차정류장”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3호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 등”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반시설”을 각각 “공공시설등”으로 하고, 제13조의2제2항제3호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으로 한다.

제13조3제1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입목본수도”를 “입목축적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도(산림청장이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상 목포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비율)가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17조제1호 단서 중 “입목본수도”를 “입목축적도”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에”를 “방법은 다음 각 호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목축적도 조사방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

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3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48조의3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를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3항제3호”를 “영 제85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57조제2항 전단 중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도시계획관련업무 담당국장,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 도시재생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별표 5] 사목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카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한다.

하목 (3)과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를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거목 (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같은 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카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카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나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과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 반게임제공업의 시설”로 한다.

아목 중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9] 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 시설”로 한다.

자목 중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0] 나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 시설”로 한다.

바목 중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1] 바목 중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2] 바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 시설”로 한다.

카목 중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타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 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아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 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타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 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카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 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시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따로 정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 ----- ----- ----- 한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생략) 1.~8. (생략)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u>자동차정류장</u>, <u>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u>, <u>유통업무설비</u>, <u>전기·가스·열공급설비</u>, <u>체육시설</u>, <u>연구시설</u>, <u>사회복지시설</u>, <u>폐기물처리시설</u>을 말한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② ----- <u>자동차정류장</u>, ----- ----- ----- <u>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u> -----.
제13조의2(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내 <u>기반시설</u>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u>기반시설</u>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u>기반시설 설치내용</u>, <u>기반시설 설치비용</u>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u>기반시설</u>의 설치	제13조의2(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① ----- <u>공공시설등</u> ----- ----- 1.~2. (현행과 같음) 3. ----- <u>공공시설등</u> ----- ----- ② ----- <u>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u> ----- ----- 1. ----- <u>공공시설등</u> -----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생 략) 3. 공공기여 내용 중 <u>기반시설 설치비용</u>의 산정은 제13조의3를 준용한다. 4. (생 략)	----- <u>공공시설등</u> ----- ----- ----- ----- ----- 2. (현행과 같음) 3. ----- <u>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u>-----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생 략) 1.~2. (생 략) ③ (생 략)	제13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 ----- ----- ----- ----- ----- <u>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u>-----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경사도, 표고, <u>입목본수도</u>(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한다)에 대한 기준이 초과한 경우 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u>입목본수도</u>(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분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u>입목본수도</u>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3. (생 략)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 ----- ----- ----- <u>입목축적도</u>----- ----- ----- ----- 1. ----- <u>입목축적도</u> (산림청장이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상 목포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 비율)가 100퍼센트 미만----- ----- ----- <u>입목축적도</u> ----- ----- 2.~3.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u>방법에 따른다.</u> 1.~2. (생 략) 3. <u><신 설></u>	제17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 -----<u>방법은 다음 각 호</u> <u>규정을</u> ----- 1.~2. (현행과 같음) 3. <u>입목축적도 조사방법 : 「산지관리법</u> <u>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u> <u>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u>
제26조의3 <u><신 설></u>	제26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 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u>경관지구</u>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u>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u> ----- ----- ----- ----- ----- ----- ----- -----
제43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생 략) 1.~16. (생 략) 17. <u><신 설></u>	제43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현행과 같음) 1.~16. (현행과 같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u>야영장 시설</u>
제48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제48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 ----- ----- ----- ----- -----<u>2020년 12월 31일</u>-----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2 (생 략)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1.~16.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1.~2.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 1.~2. (생 략)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1.~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영 제85조제3항제5호----- ----- ----- ----- ----- ----- 1.~2. (현행과 같음)
제57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u>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관련업무 담당국장,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u>, 위촉직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2. (생 략) ③ (생 략)	제5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도시계획관련업무 담당국장,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 도시재생관련업무 담당국장,</u> ----- ----- ----- -----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3호 관련) (생 략) 가.~바. (생 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5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아.~차. (생 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파. (생 략) 하. (생 략) (1)~(2) (생 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6) (생 략)	[별표 5]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3호 관련)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사. ----- -----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 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 ----- ----- ----- ----- 아.~차. (현행과 같음) 카. ----- ----- 유스호스텔----- ----- ----- ----- 타.~파. (현행과 같음) 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물환경보전법」 ----- ----- ----- ----- ----- ----- (4) 「물환경보전법」 ----- ----- ----- ----- ----- (5)~(6) (현행과 같음)

거. (생 략)

(1)~(2) (생 략)

(3) 하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생 략)

너.~어. (생 략)

저. <신 설>

거.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 「물환경보전법」 -----

(4) (현행과 같음)

너.~어. (현행과 같음)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4호 관련)

가.~차. (생 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서. (생 략)

어. <신 설>

[별표 6]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4호 관련)

가.~차. (현행과 같음)

카. -----
----- 유스호스텔 -----

타.~서. (현행과 같음)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5호 관련)

가.~차. (생 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서. (생 략)

어. <신 설>

[별표 7]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5호 관련)

가.~차. (현행과 같음)

카. -----
----- 유스호스텔 -----

타.~서. (현행과 같음)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6호 관련)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단, 기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한다)

다.~사. (생 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자.~파. (생 략)

[별표 9]**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7호 관련)

가.~라. (생 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

바.~아. (생 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차.~하. (생 략)

거. <신 설>**[별표 8]****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6호 관련)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외한다)과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사. (현행과 같음)

아. -----

-----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자.~파. (현행과 같음)

[별표 9]**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7호 관련)

가.~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아. (현행과 같음)

자. -----

-----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차.~하. (현행과 같음)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0]**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8호 관련)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

다.~마. (생 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카. (생 략)

타. <신 설>

[별표 10]**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8호 관련)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다.~마. (현행과 같음)

바. -----

-----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별표 11]****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9호 관련)

가.~마. (생 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타. (생 략)

[별표 11]**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9호 관련)

가.~마. (현행과 같음)

바. -----

-----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타. (현행과 같음)

[별표 12]**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0호 관련)

가.~마. (생 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

사.~차. (생 략)

[별표 12]**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0호 관련)

가.~마. (현행과 같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차. (현행과 같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u>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u> 타.~너. (생략) 더. <신설>	카. ----- ----- ----- ----- <u>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u>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타.~너. (현행과 같음)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u>야영장 시설</u>
[별표 14] <u>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제27조제12호 관련) 가.~카. (생략)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u> 파.~저. (생략) 처. <신설>	[별표 14] <u>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제27조제12호 관련) 가.~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u> 파.~저. (현행과 같음)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u>야영장 시설</u>
[별표 17] <u>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5호 관련) 가.~사. (생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u> 자.~러. (생략) 머. <신설>	[별표 17] <u>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5호 관련) 가.~사. (현행과 같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u> 자.~러. (현행과 같음)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u>야영장 시설</u>
[별표 18] <u>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6호 관련) 가.~카. (생략)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별표 18] <u>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6호 관련) 가.~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u> 파.~터. (생 략) <u>퍼. <신 설></u>	<u>수련시설</u> 파.~터. (현행과 같음) <u>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u>
[별표 19] <u>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7호 관련) 가.~차. (생 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시설을 포함한다)</u> 타.~서. (생 략) <u>어. <신 설></u>	[별표 19] <u>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7호 관련) 가.~차. (현행과 같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u> 타.~서. (현행과 같음) <u>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u>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